

제335회 임시회
2014. 10. 24.(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0. 2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0월 15일

-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최정욱)

가. 제안이유

○ 신규 위임사무 반영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권한 위임사무 신설 : 16건

- 국가사무 지방이양 : 재위임사무(규칙) → 위임사무(조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대한 사무(12건) : 환경정책과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사무(4건) : 환경정책과

○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2건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무(2건) : 환경정책과

○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 4건

- 승강기 관련 사무(4건) : 치수방재과 → 미래산업과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를 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하는 사무 16건과 도지사의 사무 중 2건이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임.

또한 도지사의 사무 중 4건을 사무의 이관에 따른 위임부서를 기존 치수방재과에서 미래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연월일 : 2014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신규 위임사무 반영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권한 위임사무 신설 : 16건

- 국가사무 지방이양 : 재위임사무(규칙) → 위임사무(조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대한 사무(12건) : 환경정책과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사무(4건) : 환경정책과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2건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무(2건) : 환경정책과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 4건

- 승강기 관련 사무(4건) : 치수방재과 → 미래산업과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미 래 산 업 과	1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2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청문 등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다. 보고 및 검사 등 (계량기 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라. 개선명령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8조 및 제41조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51조
	3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
	4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8조
	5	승강기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 2008.1.17> 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 제3항 같은 법 제2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정 책 과	<p>1.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p> <p>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p> <p>3.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p> <p>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p> <p>다. 측정기기 조치명령</p> <p>라. 조업정지명령 등</p> <p>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p> <p>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p> <p>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p> <p>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p> <p>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카. 과태료의 부과징수</p> <p>타. 개선계획서의 접수</p> <p>4.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p> <p>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p> <p>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p> <p>5.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p> <p>6. 보고 및 검사 등</p> <p>7.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p> <p>8.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p> <p>9.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p> <p>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중 수질3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리</p> <p>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p> <p>10.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p>	<p>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30조제1항</p> <p>같은 법 제32조제5항</p> <p>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p> <p>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제2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9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41조제4항</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p> <p>같은 법 제82조</p> <p>같은 법 제94조</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제2항</p> <p>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 제2항</p> <p>같은 법 제68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1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2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5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 내역, 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6 별표 8
	16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다음 권한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 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나.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명령 다. 개선명령 라. 폐업 등 신고의 수리 및 조치명령 마.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바. 권리·의무 승계의 수리 사.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 신고의 수리 아.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자.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등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청문의 실시 크. 과태료의 부과·징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63조
	1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관련법령 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미래산업과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략)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
2.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
3.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안전관리자, 사고의 현황 등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 1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3의2.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영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8848호, 2008.1.17.> ① (생략)

②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생략)

환경정책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사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사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33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사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② ~ ⑧ (생략)
- ⑨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20. (생략)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 ⑥ (생략)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 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1의2. ~ 13. (생략)

② ~ ③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